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기존 범위 유지) 알림

1.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제1항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86('22.1.7.)호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부(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위험도 평가 결과, 기존 설정한 범위*를 '22.1.22일부터 '22.2.4.까지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 이내 전 가금 축종, 오리 사육 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 500m ~ 1km 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추가 예방적 살처분
3.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단체는 가금농장에 동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산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강호성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2. 1. 21. 지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668	(2022. 1. 2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7	팩스번호	044-863-9210	/ 1zzibang@korea.kr / 대국민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